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최 은 하 의원)

의 안 번 호 ²⁵⁻¹²³

발의년월일: 2025. . .

발의자: 최은하, 강동오,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오옥자, 장영준, 차해영, 채우진

1. 제정이유

백일해에 대한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영아의 보호를 위해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마포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백일해 예방접종의 지원대상 (안 제2조)
- 나. 예방접종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안 제5조)
-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관계법령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4조, 제71조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5. 10. 1. ~ 10. 10.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은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 2. 제1호의 기간에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의 산모 및 배우자
 -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내용 및 절차)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의사의 예진을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그 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2010. 1. 18., 2020. 8. 11., 2023. 6. 13.〉

-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 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4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개정2015. 7. 6., 2015. 12. 29., 2020. 8. 12., 2020. 9. 29., 2023. 6. 13., 2024. 1. 30.〉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

- 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2010, 1, 18., 2020, 8, 11.〉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rangle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5. 9. 16.] [대통령령 제35752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8. 3., 2023. 8. 18.〉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 방병원은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

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23. 8. 18.〉

-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1. 6., 2020. 9.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예방접종비용)
 -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출산 후 2개월 이내 대상 포함)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
- 2. 비용추계의 전제
 - 1인별 지원 비용: 42,280원(백신비 + 시행비*)

*백신비: 22,670원, 시행비: 19,610원

ㅇ 접종대상

연도	대상자 구분	전체 대상자	접종 예상인원 (68%)	비고
1차년도(2026)		3,442명	2,341명	5% 증가 예상
2차년도(2027)		3,614명	2,458명	5% 증가 예상
3차년도(2028)	임산부 및 배우자	3,795명	2,581명	5% 증가 예상
4차년도(2029)		3,985명	2,710명	5% 증가 예상
5차년도(2030)		4,184명	2,845명	5% 증가 예상

* 혼인 증가, 출산 적령기 여성 확대, 정부 지원 강화 등으로 향후 5년간 출생아 수가 매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_	_	_	_	_	_
세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비용	98,978	103,925	109,125	114,579	120,287	546,894
,,,,	소계(b)	98,978	103,925	109,125	114,579	120,287	546,894
□총	비용(a-b)	-98,978	-103,925	-109,125	-114,579	-120,287	-546,894

4.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기타(구비)	98,978	103,925	109,125	114,579	120,287	546,894
합계	98,978	103,925	109,125	114,579	120,287	546,894

5. 덧붙이는 의견

- 대상자수는 사회경제적 변화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접종대상 1인별 지원 비용은 백신비 및 시행비의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함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건강동행과 송혜민
연 락 처	02-3153-9995